정책논단

# 외국의 관광세 사례와 제주에의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 동 일

## 1. 들어가며

2014년 5월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광세를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환경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주된 목적이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관광세, 숙박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광세에 대한 조세 저항 의지가 워낙 커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금번 국회의 관광세 관련 법률안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지난 2012년 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의 부과를 추진하였지만 거센 반발 여론에 백지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입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실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2004년에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입도세(관광세) 도입을 추진했었다. 당시 강원도는 입도세 도입을 위해 도 경계지점 60여 개소에 부스를 설치, 관광객이 강원도 경계를 넘어설 경우 1인당 1,000원 또는 2,000원의 입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이었지만 반발이 거세 실현시키지 못했다. 국내에서 관광세 부과가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조세저항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관광세 사례를 살펴보고, 관광세 도입과 관련하여 제주에의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외국의 관광세 사례

### 1) 일본의 관광세

(1) 골프장이용세

골프장이용세는 도도부현에서 골프장 이용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이용자이다. 세금의 징수는 골프장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때 징수하여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자라 하더라도 18세 미만, 70세 이상,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학교 교육활동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골프장이용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1)]

골프장이용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표준세율은 1인 1일에 대해 800엔, 제한세율은 1,200엔(76조 1항, 2항)으로 설정하고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에서는 골프장의 위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여러 등급으로 구분한 후 일반적으로 최고 등급의 골프장에 대하여 최고세율(1,200엔)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을 두고 있다.

〈표 1〉 후쿠시마현의 골프장이용세 사례

| 등급 | 이용세 | 등급 | 이용세 |
|---|---|---|---|
| 1급 | 1,200엔 | 7급 | 650엔 |
| 2급 | 1,100엔 | 8급 | 550엔 |
| 3급 | 1,000엔 | 9급 | 500엔 |
| 4급 | 900엔 | 10급 | 400엔 |
| 5급 | 800엔 | 11급 | 350엔 |
| 6급 | 700엔 | | |

자료 : http://www.kipf.re.kr/info/officialTourReport

하지만 최근 일본의 골프산업이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골프장이용세가 골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골프장이용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골프협회(JPGA)를 비롯한 일본 골프 관련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골프장이용세폐지운동추진본부'는 2013년 8월부터 전국 규모의 활동에 돌입했다.

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2011. 5, p.10

추진본부 측은 1989년 소비세의 도입으로 무도장, 볼링, 슬롯머신 등 오락시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골프장만 아직 이중과세 대상인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 입탕세

입탕세는 광천장소재의 시정촌이 광천욕장에 있어서의 입탕에 대해 입탕객들에게 과하는 세금으로 「환경위생시설, 광천원의 보호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그 외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및 관광진흥(관광시설의 정비를 포함)을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다(701조). 입탕세는 시정촌이 과세권자이며 환경위생시설, 관광시설, 소방시설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로, 입장료에 150엔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광천욕장의 입장객이며, 과세객체는 입탕행위로 세율은 1인 1일당 150엔을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다(701조 2). 「1일」은 당일치기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숙박의 경우 1박 2일은 체제의 총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해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다. 실제 세율의 채용상황은 1999년도에 대해서 보면 과세단체수로 약 90%는 표준의 150엔을 패용하고 있지만 최저 20엔부터 최고 210엔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저액의 부담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세금인가 하면, 가히 전국적으로는 시정촌세 수입액에 비해 불과 0.11%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개별로 보면 시정촌세 수입액의 17~18%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어 무시할 수만은 없다.

〈표 2〉 입탕세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
| 납세의무자 | 입장객 |
| 과 세 권 자 | 시정촌장 |
| 과 세 대 상 | 광천욕장 |
| 과세표준액 및 세율 | 과세표준 : 입탕일수, 세율 : 1인 1일 150엔(단 1박 2일의 입탕객은 1일로 봄) |
| 징 수 방 법 | 특별징수 |
| 신 고 납 부 | 조례에 정하는 때(부과기준일 : 수시) |
| 면 세 점 | 연령 12세 미만자, 공동욕장 또는 일반 공중욕장에 입탕하는 자 |

자료: 일본자치성세무국 시정촌세과. 1997. 『시정촌세 개요』.

(3) 숙박세

200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세의 하나인 숙박세는 도쿄도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숙박요금 외에 별도의 숙박세를 징수하여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숙박세의 징수는 1인당 1박 요금이 1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1만 엔~1만 5천 엔의 경우 1인당 1박에 100엔, 1만 5천 엔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박에 200엔의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

(4) 문화관광시설세

문화관광시설세(文化觀光施設稅)는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한 지역에서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와 교통체증에 대처하고, 또한 관광객을 위한 시설정비, 관광목적물의 보존 및 관리 등의 행정수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과 수익자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설정된 세목이다. 이러한 성격의 지방세는 유명사찰과 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교토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유어세

유어세(遊漁稅)는 야마나시현의 후지산에 있는 5개 호수의 하나인 카와구치호수를 행정구역으로 가진 1정2촌에서 도입한 법정외목적세로 카와구치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낚시행위에 대해 부과된 조세로, 낚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어세를 납부하고 유어세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과세근거는 1급 하천인 카와구치호수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환경미화 관련시설정비(주차장, 공중화장실, 도로정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어세의 세율은 자치조례에 의해 유어자 1인 1일의 낚시행위에 대해 200엔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는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어세를 도입한 이유는 카와구치호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파괴의 방지, 개선을 위한 재원이지만 유어세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환경세는 아니고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의 조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대책비용을 원인자에게 그 기여정도에 따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가 낚시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세수입의 충당범위가 환경보전을 넘어 환경미화까지 포함하고 있

어 수익자부담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2)]

### 2) 미국의 관광세

미국은 2010년 3월부터 EASTA(미국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1인당 10달러의 관광세를 징수하고 수익의 50%를 국가홍보 예산에 편입하는 등 관광세 징수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광세 중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이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호텔 숙박세(hotel room taxes)로 세율은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하와이주의 경우 7.25% 등 평균 10~11%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호텔 숙박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징수가 간편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자발적인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식품 및 음료수세(food and beverage tax)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율은 5%로 호텔 숙박세에 비해 낮지만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33개 주정부가 극장·나이트클럽·스포츠센타·카바레 등 유흥업소를 출입할 경우 입장료에 6% 내외의 오락세(entertainment taxes)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주정부와 시들이 관광 관련 세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USA투데이는 46개 주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9년 7월 들어 하와이 네바다주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관광 관련 세율을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하와이 주정부는 최근 호텔 숙박비에 부과하던 7.25%의 세율을 8.25%로 올렸으며 내년 7월 9.25%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고, 네바다주는 숙박비 세율을 3%포인트 올려 최고세율이 12%로 높아졌다.

### 3) 이탈리아의 관광세

이탈리아는 2011년 1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0년 7월 28일 로마시의회에서 승인된 관광서비스에 대한 숙박세 도입 적용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로마시내에서 숙박을 하는 모든 외래관광객은 투숙호텔에 관광세를 지불하고 있다. 1~3성급에 머무르는 투숙객은 최대 10박까지 1박당 2유로(1인 기준), 4~5성급 호텔 숙박객은 1박당 3유로(1인 기준) 가량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2011. 5, p.16.

을 호텔에 내야 하는데, 단 2세 미만의 어린이와 유스호스텔 숙박자는 관광세 부과 면제대상이다.

이탈리아는 로마에 그치지 않고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호텔, 호스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에 숙박을 예약하게 될 때 숙소 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1유로의 금액을 지방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숙소 등급에 따라 매 1인 1박당 최대 5박 기간 동안 1유로씩 지불해야 하고, 숙소 외 시설로 간주되는 B&B 민박은 2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베네치아 시민이거나 10세 이하의 어린이, 호스텔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수기에 속하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베네치아 외곽도시들에서 숙박하거나 베네치아 주변 섬에 숙소를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20%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법의 제정으로 인해, 시 재정은 약 200만 유로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불편함을 넘어 비싼 물가와 숙박비 외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방문이 줄어들지 정확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 4) 필리핀의 관광세

필리핀은 해외로 출국하는 자국민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 항공권 좌석등급에 따른 공항세를 관광세로 징수하고 있다.

관광세 납부방법은 항공권을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일 경우 공항 출장사무실에서 납부하는 방법, 직접 해당 관청에 납부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공항세 외에 200페소의 통과세(세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표 3〉 필리핀의 공항세 형태

| 구 분 | 퍼스트클래스 | 이코노미클래스 |
|---|---|---|
| 정 규 요 금 | 2,700페소 | 1,620페소 |
| 어린이요금(만 2세~17세) | 1,350페소 | 810페소 |
| 만 2세 미만과 경로자 | 400페소 | 300페소 |

자료: 연구자 재구성.

〈표 4〉 외국의 관광관련세의 종류

| 국 가 | 관광관련세의 세목 |
|---|---|
| 스위스, 프랑스 | 체제세 |
| 이탈리아 | 특별요양세, 숙박세(로마) |
| 네덜란드, 헝가리 | 숙박세(암스테르담), 숙박세(부다페스트) |
| 독일, 스페인 | 관광세, 공항세 |
| 불가리아, 폴란드, 폴리네시아 | 관광계획세 |
| 페루 | 소비세 |
| 멕시코 | 천연자원개발세, 입장세 |
| 스웨덴, 캐나다 | 삼림세 |
| 호주, 홍콩, 인도 | 입장세 |
| 스리랑카, 말레시아 | 입탕세(온천세) |
| 아일랜드, 콜롬비아 | 관광세 |
| 일본 | 골프장이용세, 입탕세, 숙박세(도쿄) |
| 미국 | 호텔숙박세, 관광오락세, 식음료수세 |
| 대만 | 오락세 |
| 싱가포르 | 관광진흥세 |
| 필리핀 | 공항세 |
| 도미니카 공화국 | 여행자카드세, 출국세 |
| 사이판 | 관광진흥세 |

자료: 강원도 연구단. 1995.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세도입방안』.p.50 재구성.

### 5) 주요국의 카지노세

(1) 미국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주에 최초로 카지노를 허가하였는데, 1980년대 들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카지노는 미국의 대표적 세수확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에는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라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세수입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있다. 카지노설치 부대조건으로 각 지역의 카지노사업자는 5천만 달러의 직업훈련투자와 2억5천만 달러의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는 이번 카지노 도입이 고용 창출과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는 물가에 연동하여 보정(조정)된 총 이익금의 0.25%에서 70%의 세율로 카지노세를 징수하고

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에서는 선상카지노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주들은 단일세율을 게임 수익금에 부과하는데 8%의 세율을 부과하는 사우스 다코타와 뉴저지,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코넷티컷 등 다양하다.

(2) 호주

카지노가 활성화돼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모두 주세로 되어 있으며 클럽과 호텔을 구분해 각기 다른 세율의 게임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카지노는 호주문화의 일부로 발전되어 왔으며, 가구당 게임소비액은 가처분 소득의 2.1%로 미국의 2배, 영국의 3배를 넘는다. 호주의 카지노 허가권은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카지노개발은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세입을 증대시키고 대규모 지역개발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카지노업체는 보통 그들 수입의 4~5%를 주정부에 납부하며, 그 매출액에 연방 기업세와 어떤 경우에는 지역 복지세 및 종업원 면허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히, 호주에서는 카지노에 사회세(Social Tax)를 신설하여 카지노의 일반 세금의 매출액의 1~2%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세는 카지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사회세는 카지노 매출액의 1%를 내는 고정세이며, 시드니 카지노의 경우 2%의 사회세를 납부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카지노 역사는 200년 이상으로 일찌기 바덴바덴과 비스바덴은 18세기 중엽부터 카지노 게임이 설치된 도시들이다. 1820년대에는 20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었으나, 1850~1990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은 모두 문을 닫았다. 현재, 14개 주에서 38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으며 소유권은 완전 주정부 소유로부터 개인소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카지노업체는 매일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4) 필리핀

1997년 카지노가 정식 허가되어 운영되었으나 매출액 보고를 중단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어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집권 이후 PAGCOR(Philippines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이라는 국영기업체에서 직영해오고 있다. 또한 PAGCOR은 카지노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수빅과 같은 특별경제개발지구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카지노 특허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PAGCOR의 카지노 매출액은 국영기업체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중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경비(전체 매출액의 25~30%)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국가재정 및 공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사업의 수익금은 도로, 학교, 병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사용된다. 또한 시 공무원 급여, 지방학교 학생의 교과서 구입, 지방병원의 의료시설 및 약품 구입과 그밖에 지방 상수도, 에너지개발, 문화발전기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3)]

(5) 마카오

2006년 마카오의 에드먼드 호 행정장관은 시정연설을 통해 2007년도의 4억 7천만 마카오파타카(약 564억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카지노세 등 탄탄한 세수입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여행세 등의 감면조치를 통해 카지노 이외의 소매와 부동산업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999년 말 중국에 반환된 마카오는 아시아 최대의 도박도시로 21개의 카지노에서 테이블 1,925개, 슬롯머신 4,533개가 운영되고 있다. 1934년에 최초로 카지노 산업이 등장하였으며, 지난 1961년 이래 카지노장을 독점 운영해 온 마카오관광오락공사의 영업허가 시한이 2001년 말 종료되면서 카지노 시장이 개방되었다. 2002년에는 3개의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했고, 미국의 2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자본이 진출해 카지노산업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카지노로 성장하고 있다.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산업, 특히 딜러는 마카오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와 동남아 사람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취업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카오의 카지노업체들은 전체 수입의 35%를 카지노세 명목으로 마카오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발전과 문화진흥기금으로 추가로 5%를 납부하고 있는 등 카지노세가 마카오 세수입의 절대적이다. 마카오에서는 카지노수입이 지역사회 경제와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카지노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소매, 제조, 무역 분야에서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3)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pp.65-66.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의료비는 무료이며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3. 시사점

### 1) 수익자부담 원칙을 중시

일본의 골프장이용세, 입탕세, 숙박세는 물론이고 미국의 숙박세, 카지노세, 오락세, 마카오의 카지노세 등은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익자는 관광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관광객은 물론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관련 관광사업체들의 부담을 당연시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이다.

### 2) 조세저항을 최소화

미국에서 시행하는 호텔 숙박세(요금의 평균 10%), 일본의 호텔 숙박세(1인 1박당 100~200엔), 이탈리아의 숙박세(1인 1박당 1~3유로), 필리핀의 공항세, 도미니카 공화국의 출국세 등 대부분 국가들의 관광세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관광요금에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별도의 징수를 통한 거부감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3) 면제와 할인제도의 적극 활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자, 연소자, 지역주민 등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관광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차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사례처럼 비수기에 속하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베네치아 외곽도시들에서 숙박한 사람들에게는 20%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 4. 맺으며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은 그것이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액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상당한 '반발력'을 동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관광세의 도입은 다양한 사전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관광객은 제주도에서 관광활동을 하는 과정에 경찰, 소방, 기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보고 있다. 단순히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둘째, 조세저항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도와 마라도, 전남 신안군의 증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법적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와 우도는 해상도립공원 입장료 명목으로 각각 1,500원과 1,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특히 우도의 경우 이를 통해 2012년 11억 5,7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두는 등 해마다 관광객 증가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마라도와 우도, 증도의 입장료 정책이 실현된 것은 세금이 아닌 요금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도의 경우 관광객들이 섬을 나갈 때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입장료 가운데 1,000원을 환불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환불 정책은 우도와 마라도의 경우도 법적인 논란과 향후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크다.

셋째, 다양한 면제와 할인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주민만을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면제 대상 확대와 계절별 할인 정책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분산효과를 동시에 노릴 때 환경보전이라는 명분도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주발전포럼

**＊참고문헌**

강원도 연구단,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세도입방안』, 1995.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 7.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2011. 5
일본자치성세무국 시정촌세과. 1997. 『시정촌세 개요』,
http://www.kipf.re.kr/info/officialTourReport